

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안녕하십니까?

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찬 의원입니다

□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께 지난 3월 2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는 기존 장학지원이 정규학교 재학 대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,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.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.

주요골자는

- ▲ 제 1조에 조례 규정 목적에 서울장학재단 지원가능 대상에 “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”을 추가
- ▲ 제2조 제2호에 “청소년”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 신설
- ▲ 제6조에 제1항 및 제5호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으로의 “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”을 추가

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